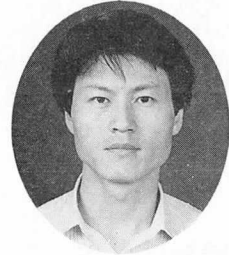


농어민연금 이렇게 실시된다



장 재 혁 행정사무관
(보건복지부 농어민연금실시반)

1. 농어민연금의 실시배경

가.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및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농어촌 인구는 점차 감소되고 노령화되어 '90년 현재 농어촌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5.3%로서,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 경에는 22.4%로 급증될 전망이다.<표 1> 또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으로 전통적인 노인부양의식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노인들의 경우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위한 노후보장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1> 인구 노령화 추이

(단위 :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농어촌	7.9	10.5	15.3	22.4
전 국	5.4	6.1	7.3	10.0

*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보』

나. 농어촌 경제의 취약성 보완

농수산물물은 상품의 특성상 생산량 및 가격변동이 심하여 농어촌의 소득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며, 제조업 종사자 등 도시가구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UR타결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추세에 따라 생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스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어려운 농어민을 위한 소득보장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다.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위화감 해소

현행 국민연금제도상의 노령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08년에 이르러 연금을 받는자와 받지 못하는 자 사이에 생기게 될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조기에 농어민 및 도시자영자 등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농어민 등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령인구의 기본적 생활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무각출연금지급요구 등 국가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

2. 농어민연금 실시방안

가. 기본 방향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농어촌지역(군)에 확대 시행하되 보험료는 농어촌의 현실적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3%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어민에 한하여 UR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점을 고려하여 최저등급(22만원) 보험료의 1/3을 농특세재원에서 균등하게 지급한다.

특히 시행당시 고령 농어민의 가입연령을 65세 미만까지 연장하고 농어민연금의 기본 업무는 국민연금 전산망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선업무는 의료보험조합과 연계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나. 세부시행방안

1) 적용대상

농어민연금의 당연적용 대상은 농어촌(군)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자영자 및 도시거주 농어민으로서 '95년 규정대상은 약 206만 여명에 이른다. 현행 국민연금법 상 적용기준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당연적용 가입대상으로 하되 18세 이상 23세 미만은 적용 제외토록 하며 가입후 군입대, 질병, 파산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람은 『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규정을 두어 자격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당연적용가입자의 배우자,

외국인, 기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가입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노령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농어민의 특성을 반영하여 '95년 시행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고령 농어민에게까지 가입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하였다.

농어민연금이 시행되면 현재 가입중인 농어촌 지역가입자는 모두 농어민연금에 자동적으로 흡수되며 도시지역가입자는 현재의 임의적용방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한편 지역간 수출입 문제는 군부지역에서 시부지역으로 갈 경우 가입을 임의화 하며 시부지역에서 군부지역으로 갈 경우는 농어민연금을 당연히 적용받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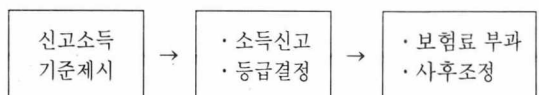
2) 보험료 부과 및 급여관리

농어민연금의 보험비율은 기존 사업장가입자와의 부담상의 형평성과 농어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1999년까지는 사업장가입자의 초기 보험비율 3%를 적용하고 그후 5년 단위로 3%씩 상향조정하게 된다.

보험료부과체계는 먼저 정부에서 소득신고를 위한 기준자료를 미리 제시한 후 가입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소득등급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를 사후 조정하는 방안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가입자의 등급별 소득분포가 적

〈그림 1〉 보험료 부과체계



정히 이루어 지도록 현행 최저 등급 소득(7만원)을 22만원으로 하고 최고등급소득(200만원)은 3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득등급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림 2〉 표준소득등급 조정

현행	→	조정
53등급(7만원-200만원)		45등급(22만원-360만원)

한편 지급되는 급여로는 현행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특례노령연금을 그대로 적용하되 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유족에게도 위로금 형태의 사망 일시금이 지급된다.

〈표 2〉 가입자의 부담 및 연금급여액(예시)

(단위: 원/월)

표준 소득월액	최초불입액	특례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안전노령연금
		5년	15년	20년(기본)
22만원	6,600	60,750	161,930	220,000
73만원	21,900	79,870	217,390	297,000
99만원	29,700	89,620	245,660	336,000
166만원	49,800	114,750	318,530	436,500

*도표상의 연금액은 '95. 7월 현재 불변가격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 중의 임금상승률과 최초 수급이후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도표상의 금액보다 훨씬 많게 됩니다.

3) 정부재정지원 및 관리운영조직

농어민연금실행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약 13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농어민에 한하여는 농특세 재원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최저등급 보험료의 1/3)를 정액 지원하게 되는 데 '95년 시행초년도의 정부재정소요는 관리운영지원비(281억원)와 연금보험료지원 174억원 등 총 455여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농어민연금은 향후 전국민연금의 실현을 고려 현행

국민연금전산망계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각종 신고 및 민원상담 등의 일선업무는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의 기능분담을 도모할 계획이다.

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농어민연금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농어민연금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농어민연금 도입 준비위원회,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각계의견을 수렴하였고 특히 '94. 3월과 11월에는 충남 홍성군 등 4개 지역에서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하여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분석하여 이를 동 시행방안의 내용에 반영하였다.

또한 올 하반기에 차질없이 농어민연금을 시행하기 위하여 '95. 1월 정부내에 농어민연금실시반(보건복지부, 공단 공동구성)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소득일체 신고기간운영(4. 10~5. 31), 시·도 설명회 개최, 대국민홍보 추진 등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농어민연금이 실시되면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사업은 한층 더 수혜의 폭을 넓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하는 전국민연금이 조속히 실현되어 국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